고용보험 이의신청에 관한 주요 결정례

"고용보험 이의신청에 관한 주요 결정례"는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실업급여 지급, 지급제한 및 반환·징수명령 처분 등에 대한 피보험자의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에 관련한 6개 지방노동청과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결정례(재결례 포함) 중 새롭게 주목될 만한 것을 소개하는 것으로서 사건개요와 결정요지로 분류하여 실었다. 되도록 원문 그대로 소개하였으나 내용을 좀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례별로 독자적인 제목을 달고 원문을 축약하였으며 단어에 수정을 가하기도 하였고 필요시 각주를 달았다.

■ 노사합의로 이루어진 임금삭감에 불만을 느껴 이직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임금삭감이 적법 절차에 의한 노사합의로 이루어졌고 이직 1년 전 임금이 지연 지급된 사실이 있을 뿐이라면 이를 이유로 한 이직은 정당한 사유 없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고용보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건개요】 청구인 김○○은 대전시 대덕구 소재 (주)남성정공(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 1999. 8. 14. 이직한 후 같은 해 8. 27. 대전지방노동청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에 고용보험 수급자격 신청을 한 자이다. 청구인은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연장근로수당 및 상여금 등의 임금을 삭감하고 체불함에 따라 생계곤란을 겪게 되어 부득이 이직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처분청은 당시 회사의 임금삭감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노사합의로 이루어졌고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보이지 않으며, 1998. 4.부터 임금이 체당지불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청구인의 이직 1년 전에 있었던 사실일 뿐 그 이후에는 체불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직은 정당한 사유없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한다고 보아, 1999. 9. 22. 수급자격을 불인정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청구인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를 청구한 사례이다.

【결정요지】 고용보험법상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직사유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것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법 제45조 제1항 및 노동부 고시 제98-63호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기준"은 "피보험자가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라도 다음 각 항의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채용시 사업주가 제시한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제외). 다만 사업주가 채용시에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던 근로조건을 정당한 절차를 거쳐 변경함으로써 채용조건보다 실제의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①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 이상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② 이직 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

③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계속하여 2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

본 건에서 문제된 상여금 삭감은 연간 삭감률이 2할 이상이기는 하나 전 근로자와 회의적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노사합의로 삭감된 것이어서 위 가)단서에 의해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고, 임금지연 지급 역시 이직 전 1년 전에 발생된 사실일 뿐 그 이후에는 지연지급된 사실이 없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기에는 미흡하다. 또한 본 임금삭감 합의가 잠정합의이기는 하나 합의서에 합의서 적용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회사가 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1999년 심사결정 대전 제76호).

■ 수급기간의 연장신청도 수급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직 당시 지체장해로 인한 치료중이었더라도 실업급여는 '이직 후 10월 이내'라는 수급기간 내에서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되는 것이고 수급기간의 연장도 수급기간 내에 직접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므로, 수급기간 자체를 도과한 이후 실업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급기간의 연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사건개요】 청구인 유○○는 부산시 소재

(주)파라다이스호텔(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산업재해로 12급의 장해를 입어 1998. 2. 15. 이직한 자이다. 그 후 요양급여·장해급여를 수령하고 치료를 받아오다 1999. 10. 13. 부산지방노동청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에 고용보험 수급자격 신청을 하였다. 원처분청은 청구인의 신청은 이직 후 약 20개월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도과하였다며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행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자신이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한 것은 이직 당시 입은 지체장해로 장기치료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자신의 수급기간을 연장하여 위 처분을 취소하고 수급자격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심사를 청구한 사례이다.[1)]

【결정요지】 고용보험법 제33조는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이직 후[1)]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 제1항은 "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10월 내[2)]에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급여일수[3)]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39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0월의 기간 중 임신·출산·육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취직할 수 없는 자가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10월의 기간에 그 취직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3년을 넘을 때에는 3년)[4)]내에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1)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은 반드시 '이직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예컨대 대표이사 사임절차가 완료되었다는 통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행하였던 사례에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국민연금 등과 관련한 대표자 변경이 수급자격 신청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록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그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더라도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다(1999년 심사결정 제363호). 또한 명예퇴직 절차를 밟은 뒤 계약직으로 약 2개월 15일간 더 근무한 자가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행한 사례에서도 본인은 계약기간이 곧 만료될 예정이고 이직 당시 1억원 이상의 금품을 지급받아 3개월간 지급유예조치를 받을 것임을 감안하여 미리 신청한 것일 뿐 부정수급의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기각하고 부정수급으로 본 예가 있다(1999년 재결 제204호).

2) 1999. 12. 31. 고용보험법 개정(법률 제6099호)에 의하여 2000. 4. 1. 이후 이직한 자에게는 수급기간이 12월로 연장 적용된다(법 제39조, 부칙 제1조 및 제2조).

3) 소정급여일수는 앞 주의 고용보험법 개정에 의하여 2000. 1. 1. 이후 이직한 자부터 각 30일씩 상향조정된다(고용보험법 별표 1 참조).

4) 수급기간 연장의 한도 역시 위 고용보험법 개정에 의하여 2000. 4. 1.부터는 4년으로 상향조정된다.

그리고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에 의하면 "계속하여 30일 이상 취직할 수 없는 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그 사유발생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기간 연장신고서에 수급자격증(수급자격증을 교부받은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에 비추어 볼 때 본 건은 10월을 경과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 등 실업신고를 하였으며 10월 중에 수급기간 연장에 관한 신고를 한 사실도 없다. 산업재해로 장기치료를 받느라 실업신고 및 수급기간 연장신고를 제때 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대리인을 통해서라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하여야 하는 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1999년 심사결정 부산 제97호).

■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중노위의 알선으로 권고사직한 것으로 회사와 합의함으로써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이 취소되었더라도 수급기간은 이직일로부터 기산한다

징계해고로 이직한 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중노위의 알선으로 권고사직한 것으로 회사와 합의함에 따라 당초 원처분청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이 취소되었더라도 수급기간은 이직일로부터 기산하여 10월 이내이고 수급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으며 그 기간 중 공공근로에 참여한 일수는 구직급여 지급대상일에서 제외된다고 본 사례

【사건개요】 청구인 이○○는 1998. 8. 18. (주)삼양제넥스(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징계해고(이직)된 자로, 회사의 징계해고처분에 불복하여 1998. 8. 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서울지노위'라 한다)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12. 16. 서울지노위로부터 '중대한 직장질서 문란행위'로 해고된 것이라며 기각처분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1999. 1. 4.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 한다)에 재심을 신청하는 한편, 1999. 2. 27. 서울중부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원처분청은 같은 해 3. 9. 이직사유가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임을 이유로 수급자격을 불인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같은 해 5. 3. 청구인은 중노위의 알선에 의하여 '① 청구인은 1999. 1. 4. 중노위에 제기한 재심구제신청을 즉시 취하한다. ② 회사는 청구인의 징계해고를 철회하고 청구인은 회사를 1998. 8. 18. 자로 퇴직한다'고 회사와 합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1999. 5. 8. 원처분청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같은 해 6. 10. 취소처분이 내려졌다. 그 과정에서 청구인은 같은 해 3. 2.부터 6. 1.까지 공공근로에 참여한 사실이 있다.

그 후 원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직일인 1998. 8. 18.(회사와 합의한 이직일)부터 기산하여 수급기간 10월, 즉 1999. 6. 18.까지의 기간 중, 고용보험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후인 1999. 2. 27. ~ 같은 해 6. 18.까지의 기간에 대해 소정급여일수 60일을 결정하면서 공공근로에 참여한 1999. 3. 2.~ 같은 해 6. 1.을 제외한 6일분의 구직급여 130,620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원처분청이 수급자격을 불인정하는 잘못된 처분을 내림으로써 공공근로에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정급여일수 60일 중 54일에 대해서만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원처분청에 수급기간연장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원처분청은 1999. 6. 23. 위 청구인의 주장은 수급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인정하였다.

같은 해 8. 23.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도 기각되자, 청구인은 ①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심사관의 취소처분이 내려진 기간(1999. 2. 27. ~ 6. 10까지의 103일간)만큼 청구인의 수급기간을 연장하여 주거나, ② 청구인이 공공근로를 하여 발생한 소득을 반환하고 동 공공근로기간(같은 해 3. 2. ~ 6. 1) 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여 주거나, ③ 청구인의 징계해고가 철회된 같은 해 5. 3.을 기준날짜로 수급기간 '10월'을 기산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여 줄 것을 주장하며, 1999. 9. 13.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한 사례이다.

【결정요지】 고용보험법 제39조 제2항은 "10월의 수급기간 중 임신·출산·육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취직할 수 없는 자가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10월의 기간에 그 취직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3년을 넘을 때에는 3년)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구직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임신·출산·육아 외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하여 "1.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2. 배우자의 질병 또는 부상, 3.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4.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5.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경우로써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이다.

본 건에서 청구인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시점은 1999. 3. 2.이며 원처분청으로부터 청구인이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불인정하는 처분을 받은 날은 같은 해 3. 9.이어서

원처분청의 잘못으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심사결정에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취소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 수급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또한 청구인과 회사와의 합의에서 1998. 8. 18.자로 퇴직한 것으로 합의함으로써 이직일은 1998. 8. 18.인 점 등에 비추어, 원처분청이 행한 수급기간 연장신청 불인정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1999년 재결 제192호).

■ 해외 취업으로 인한 출국으로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는 장래의 날에 대해서는 취업일까지 실업상태에 있음을 증명하더라도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

실업의 인정은 수급자격자로 하여금 실업인정일에 '출석'하게 하여 지난 2주간의 구직의사 및 능력의 존부, 실업 여부 등을 '사후적'으로 일괄 판정하는 것으로 30일 이내에 취업이 확정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라도 적극적인 구직활동 여부의 확인을 면제받을 수 있을 뿐 출석 자체를 면할 수는 없으므로, 출석하지 않은 후일의 실업기간에 대해 미리 실업을 인정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실업의 인정은 수급자격자로 하여금 실업인정일에 '출석'하게 하여 지난 2주간의 구직의사 및 능력의 존부, 실업 여부 등을 '사후적'으로 일괄 판정하는 것으로 30일 이내에 취업이 확정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라도 적극적인 구직활동 여부의 확인을 면제받을 수 있을 뿐 출석 자체를 면할 수는 없으므로, 출석하지 않은 후일의 실업기간에 대해 미리 실업을 인정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사건개요】 청구인 고○○는 한국통신 원주통신망운용국(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 명예퇴직에 응하여 1999. 6. 30. 이직한 자이다. 청구인은 같은 해 7. 10. 원주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에게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정급여일수 120일, 수급기간이 1999. 7. 1. ~ 2000. 4. 30인 내용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3차의 실업인정 확인 후 1999. 9. 10까지의 구직급여 910,000원을 지급받았다.

청구인은 3차 실업인정시 1999. 10. 1.자로 우루과이 현지법인에 취업하게 된 사실을 신고하면서 출국문제로 향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지만 3차 실업인정 이후 취업일인 1999. 10. 1.까지의 기간, 즉 1999. 9. 11.~1999. 9. 30까지는 분명히 실업상태에 있으므로 그 기간에 대한 구직급여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원처분청은 동 기간 동안의 구직활동, 실업상태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실업불인정처분을 내리고 구직급여

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러한 처분은 국내취업자와 비교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부당하다며 1999. 9. 10.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를 청구한 사례이다.

【결정요지】 고용보험법 제34조에 의하면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이 있는 자가 실업하고 있는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 제3항에 의해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기산하여 2주간에 1회씩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전 14일간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예규 제403호 제7조 제2항은 "수급자격자가 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 전부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 제2항은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지방노동관서의 직업소개·직업지도에 응한 적이 없고 스스로도 구인에 응모한 적이 없는 자는 수급자격자가 근로의 의사 또는 근로의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하나 30일 이내에 취업이 확정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업의 인정은 수급자격자가 미리 지정된 인정일에 해당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그 날 이전의 각 일마다 실업하고 있었는가의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급여대상일을 확인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고용보험수급의 기본이 되는 사항이다. 실업의 인정은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각 일에 관하여 후일 일괄적으로 인정하는 데 직업안정기관이 각 일의 구직의사 및 능력의 존부 여부 판정이 곤란하므로 전 인정일 및 당해 인정일의 출석을 요건으로 하고 수급자격자가 그것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 그 사이의 인정대상기간 중의 구직의사 및 능력의 존재를 추정한 다음, 수급자의 비실업일의 신고를 아울러 판단하여 각 일의 실업인정을 하고자 한 것이다. 실업인정일에 대한 출석은 곧 인정대상기간의 실업인정상의 법률상의 요건이다.

청구인이 30일 이내에 취업이 확정되어 있음을 증명하였더라도 이를 통해서는 단지 적극적인 구직활동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실업인정이란 지난 2주간에 대해 실업을 인정하는 행위이므로 미리 후일의 실업을 인정해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1999. 9. 11. ~ 1999. 9. 30까지의 기간 동안 실업을 불인정한 처분의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요구한 것은 이유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1999년 심사결정 서울 제394호).

■ 특별연장급여 지급 여부는 이직 당시 지급받은 금품만을 기준으로 하며 심사청구 제기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불복할 수 있다

특별연장급여 지급 여부는 이직 당시 지급받은 금품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부지급처분을 내리면서 심사청구제기기간에 대하여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사건개요】 재심사청구인 허○○는 한국전산원(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1999. 1. 1. 이직한 후 같은 해 1. 11. 성남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여 원처분청으로부터 소정급여일수 120일, 구직급여일액 35,000원을 결정받고 같은 해 1. 25. ~ 6. 3. 구직급여 4,200,000원(120일분)을 수급하였다.

청구인은 마지막 실업인정 신청일인 1999. 6. 4. 특별연장급여 지급 여부에 대하여 원처분청에 문의하였다. 원처분청은 고용보험전산망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이직 당시 지급받은 금품이 51,100,000원 이상(53,401,330원)이기 때문에 고용보험법 제42조의 3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의 2에서 규정하는 특별연장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한다며[5], 부지급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직하기 전인 1998. 6. 30. 미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47,130,95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실제 이직 당시 지급받은 금액은 6,270,380원(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합계)에 불과하고 따라서 특별연장급여 지급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같은 해 10. 11. 서울지방고용보험심사관에게 위 처분을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고용보험심사관은 같은 해 11. 15. 고용보험법 제74조에서 규정하는 심사청구 제기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원처분청이 특별연장급여

5) 고용보험법 제42조의 3 제1항은 "노동부장관은 실업의 급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 내에서 수급자격자가 실업하고 있는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직 후 생활안정을 위한 일정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수급자격자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규칙 제55조의 2는 "법 제42조의 3 제1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수급자격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이직 당시 지급받은 금품의 명칭을 불문하고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기초임금일액 상한액의 24월분(730일분) 이상의 금품을 지급받은 수급자격자"를 제한사유로 하고 있다.

부지급결정처분일인 1999. 6. 4. 심사청구 제기기간을 알리지 않았으므로 심사청구기간은 행정심판법 제18조에 따라 180일로 보아야 하고[6] 따라서 자신의 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라며, 같은 해 12. 9.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한 사례이다.

【결정요지】 먼저 심사청구 제기요건에 있어서 적법한 심사청구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보면, 원처분청으로부터 1999. 6. 4. 특별연장급여 부지급처분을 받았으나 원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심사청구 제기기간에 대하여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7] 청구인은 처분이 있은 날인 같은 해 6. 4.부터 180일 이내인 같은 해 10. 1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제기요건에 있어 적법한 심사청구라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특별연장급여 부지급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회사가 53,401,330원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이직 전인 1999. 6. 30. 퇴직금 47,130,950원을 중간정산함으로써 이직 당시 지급받은 금품은 퇴직금 1,146,980원 및 퇴직위로금 5,123,400원 합계 6,270,380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고용보험법 제42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 2에서 규정하는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제외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처분청의 특별연장급여 부지급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특별연장급여 부지급처분은 취소한다(2000년 재결 제9호).

■ 부정수급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영업의 개시'는 실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부정수급의 한 유형인 '자영업의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에서 '자영업의 개시'는 형식적인 사업자등록 여부가 아니라 실제적인 사업활동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사건개요】 청구인 윤○○은 건영화물자동차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 사직을 권고받아 1998. 1. 31. 이직한 자

6) 고용보험법은 제74조 제2항에서 "심사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77조 제2항에서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은 "행정청이 심사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7) 동지 1999년 재결 제202호 참조.

이다. 청구인은 1998. 3. 27.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정급여일수 120일, 수급기간이 1998. 2. 1. ~ 1999. 1. 29.인 내용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13차의 실업인정 확인 후 구직급여 5,67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 후 원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1998. 4. 20.부터 자영업을 개시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자영업 개시일 이후 1998. 8. 7.까지 기지급받은 구직급여 3,850,000원의 반환 및 추가징수를 명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자신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사실이나 여건상 사업을 할 수 없어 그냥 방치한 채 계속 구직활동을 하였고, 1998. 9. 30.에 용산세무서로부터 등록이 직권말소되었다는 통보를 받고[8] 담당자를 찾아가 인정과세된 세금을 면제받고 폐업하였으며, 폐업할 때까지 한달치 임대료도 내지 못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면제받았던 사실들을 제시하며, 1999. 9. 9.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례이다.

【결정요지】 고용보험법 제34조 제1항은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이 있는 자가 실업하고 있는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은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기산하여 2주간에 1회씩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재취직을 위한 구직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 제47조 제1항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8조 제1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 예규 제403호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취업이라 함은 현실적인 수입 유무를 불문하고 근로계약·도급·위임 등에 의해 상시근로를 제공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부 예규 제406호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의 개시사실을 미신고한 경우"를 부정수급행위의 유형으로 정[9]하고 있고, 동조 제2항도 "부정수급행위에는

9) 한편 노동부지침(실업 68430-64)에 의해 노동위원회, 법원 등에 해고의 효력을 다툰 결과 복직될 경우에는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을 반환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한 후 복직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도 부정수급으로서 반환 및 추가징수 등이 행해질 수 있다(1999년 심사결정 서울 제389호).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와 부정수급자가 법을 알지 못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부고시 제1997-24호 제3조는 "취업(자영업 개시, 도급·위임 등 고용관계에 기인하지 않는 취업의 경우도 포함한다)하고도 그 사실을 숨긴 채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100%를 추가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단건대, 노동부예규 제403호 제2호 제1항에 따른 취업의 개념에는 현실적인 수입유무를 불문하고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실업인정을 받거나 받고자 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자영업 영위 여부는 형식적인 사업자등록 여부가 아닌 실제적인 사업활동을 하였느냐 여부에 따라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의류소매업을 하고자 임대한 사업장이 상가가 아닌 본인이 이직한 건영화물자동차(주)의 공장이었던 점, 세무서 직권으로 등록이 말소된 점 등을 볼 때, 비록 사업자등록은 필하였으나 사업활동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형식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정수급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원처분청의 처분을 취소한다(1999년 심사결정 서울 제392호).[11]

---

10) 예컨대 대리점을 차린 후 이를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수급하여 부정수급 여부가 문제되었던 사안에서 적극적으로 대리점 운영을 행하지 않았더라도 주변의 처, 친지, 동료들에 의해 이따금씩 계약이 성사되어 대리점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채 매월 일정액의 영업수입이 발생되었다면 '취업'상태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1999년 심사결정 제372호).

그러나 실무상 이를 명확히 판가름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998. 9. 1. (주)서울국제전화의 영업중개활동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줄곧 영업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했고(1998. 7. 14. ~ 10. 11) 10월에야 비로소 10여명의 고객을 확보하여 겨우 자영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다며 자영업 개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부정수급이 아님을 주장한 사안에 대해 심사위원회는 '취업'은 현실적인 수입유무를 불문한다며 기각한 예가 있다(1999년 재결 제198호). 또한 1998. 11. 10. 사업자등록 후 소주방을 운영한 이후인 11. 17. 실업인정일(제4차. 실업인정대상기간 11. 3. ~ 11. 16)에는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실업인정을 받지 않았고 자영업이 잘 되지 않을 경우 구직활동을 하고 오면 언제든지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제3차 실업인정시의 안내에 따라 제5차 실업인정일인 12. 1.(실업인정대상기간 11. 17. ~ 11. 30)부터 원처분청을 방문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였고 이를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취업'은 현실적인 수입유무를 불문한다며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1999년 재결 제202호).

요컨대 '자영업의 개시' 여부는 명백하게 자영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취업'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11)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은 자영업의 개시에 비해 엄격하다. 구직급여 수급기간(1998. 9. 1. ~ 1999. 8. 29.) 중 1999. 2. 10.자로 재취업하였으나 감리직이었기 때문에 감리용역입찰이 낙찰되면 현장에서 근무하고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입사하였으며 이직일인 1999. 4.30.까지 소속만 회사에 두었을 뿐 자택에서 무보수 대기하던 상태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어 사직

■ 조기재취직수당의 지급은 허위 기타 부정한 의사라고 볼 수 있는 적극적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된다

실업인정 신청시 재취업일을 주관적 판단으로 잘못 인식하였을 뿐 적극적 구직활동을 해왔고 재취업사실을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재취업일이 조정되더라도 조기재취직수당 수급여부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조기재취직수당의 제한사유인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받으려 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건개요】 청구인 유○○는 충남 천안시 소재 (재)아주산업환경에서 1999. 5. 31. 권고사직에 의해 이직한 자로, 1999. 6. 14. 대전지방노동청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1999. 6. 28. ~ 1999. 7. 25.까지 구직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은 자이다.

그러던 중 청구인은 1999. 7. 26. 실업인정 신청시(실업인정대상기간 1999. 7. 12. ~ 7. 25) 대전 중구 소재 (의)중앙의료재단 부속중앙의원(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같은 해 7. 26.부터 근무하게 되었다는 취업사실을 신고하면서 1999. 8. 25. 원처분청에 고용보험 조기재취직수당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원처분청은 청구인이 재직증명서 대신 제출한 근로계약서와 회사에서 제출한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1999. 7. 24.부터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9. 7. 24. ~ 7. 25.까지 이틀간 이를 숨기고 허위로 구직급여를 받았고, 따라서 고용보험법 제54조(취직촉진수당의 지급제한)에 의해 부지급 결정처분을 내린다고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자신은 1999. 7. 24. 회사에서 면접을 치루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999. 7. 26.부터 근무하기로 명받았고 실제 근무를 시작한 것도 7. 26.이며, 너무 바쁜 관계로 원처분청에 재직증명서 대신 최종면접일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송부하여 오해가 생겼을 뿐이라며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함으로써 자신이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은 부정수급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취업'은 현실적인 수입 유무를 불문한다는 이유로 배척되었다(1999년 심사결정 제374호). 다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3~6개월간 교육을 받아야 정식 직원이 될 수 있으며 교육기간 동안 급여가 전혀 지급되지 않았던 사안에서 1일 근로시간 8시간에도 미치지 못하는 1일 30분~40분 정도의 무계획적인 교육을 받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한 바 없는 등 회사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기 위해 본인을 악용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직함으로써 이를 신고하지 않고 이직하였던 사안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으로 판단했던 원처분청의 처분을 취소하였다(1999년 재결 제199호).

한편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단순히 자원봉사를 하고 약간의 사례금을 받은 경우(1999년 심사결정 제369호)나 아는 사람의 회사에 가끔씩 나가 일을 도와주면서 일을 배운 경우(1999년 심사결정 제364호)는 '취업'으로 보지 않는다.

【결정요지】 실업인정규정(예규 제403호) 제2조 제1항 제1호는 "실업인정이라 함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는 자(이하 '수급자격자'라 한다)에 대하여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동 규정 같은 조의 같은 항 제6호에서는 "취업은 현실적인 수입 유무를 불문하고 근로계약, 도급, 위임 등에 의해 상시근로를 제공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동 규정 제9조 제1항에서 "담당직원이 실업을 인정하는 때에는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신청서에 기재한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의 취업사실을 토대로 하여 취업한 날을 인정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1.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피보험자격을 보유하는 날, 5.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하였다고 인정되는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다.

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조기재취직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직업에 재취직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의 미지급일수가 당해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한 날 이전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12]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위의 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수급자격자가 법 제40조(대기기간)의 규정에 의한 대기기간이 경과한 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수급자격자가 이직전의 사업주 또는 이직전의 사업주와 관련있는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13]에게 재고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12)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는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에 의해 "재취업한 날 이전 2년 이내"를 말한다. 그리고 법문상 명확하듯이 '2년 이내'라는 제한은 조기재취직수당을 실제 수령한 날이 아니라 재취업한 날, 즉 조기재취직수당 수령의 원인이 되는 조기재취직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적 기준이 부당하다고 주장되었던 사안에서 실제 수령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조기재취직수당 지급에 걸리는 행정처리기간의 장단에 따라 조기재취직수당 지급의 가부가 결정될 수 있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1999년 심사결정 대구 제55호).

13) '관련사업주'인지 여부와 관련된 사안은 이미 여러 차례 동향을 통해 소개된 바와 같이 매우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그 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의 2 제1항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 제54조 제1항에서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부터의 취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급여와 관련된 이직 이후에 새로이 수급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그 새로운 수급자격에 의한 취직촉진수당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 건의 경우 청구인이 1999. 7. 24. 최종 면접과 동시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도 1999. 7. 26. 실업인정 신청시 청구인의 주관적인 판단(실제 출근하게 되는 첫날)으로 취업확정일자를 1999. 7. 26.로 인식한 것은 실업인정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취업사실 신고에 있어 본인의 책임하에 사실대로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실업인정신청서에서와 같이 1999. 6. 18.부터 1999. 7. 24.까지의 실업인정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다는 것이 인정되는 점, 1999. 7. 24. (재)중앙의료재단에 구직활동을 하고 취직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신고함에 있어 구직자로서의 성실한 신고가 인정되는 점, 그리고 재취업일이 1999. 7. 24. 또는 1999. 7. 26.로 된다 해도 조기재취직수당 수급 여부에는 영향을 받지 않으며 단지 조기재취직수당 금액상에서 18,240원 정도의 차액만 발생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원처분청이 청구인의 재취직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와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상의 취업일을 기준으로 한 것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고용보험법 제47조와 동법 제54조에서 부정수급으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은 실업급여 수급 자체에만 목적을 두고 부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는 적극적인 고의가 있는 경우에 인정하여야 할 것이어서, 본 건의 경우 적극적인 고의를 인정하기는

"1. 이직전 사업이 합병·분할되었을 경우 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
2. 이직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일방의 발생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
3. 이직전 사업의 시설·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4. 이직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 등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가 그것이다.

따라서 비록 전에 근무하였던 곳에서 회사를 설립하니 일을 같이 하자는 제의에 따른 재취업이고 사업장 소재지가 같다 하더라도 종전 사업주 건물의 일부를 양도가 아닌 임차한 경우이고 사업자등록증과 업종이 다르다면 '관련사업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1999년 심사결정 성남 제383호).

무리라고 보인다.

따라서 구직급여 지급중지와 취직촉진수당 제한의 법정신, 청구인의 금전적 실익 등 이상의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조기재취직수당 수급만을 목적으로 허위 또는 부정한 의사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1999. 7. 26.을 재취업일로 신고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원처분청의 조기재취직수당 부지급결정처분은 취소한다(1999년 심사결정 대전 제73호).